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444호

시행일자 2020. 11. 27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4호(2020.11.27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을 개정·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개정내용 :
-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

나. 시행일 : 2020.12.01.(화)부터
* 다만, 별지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

다. 보건복지부 문의처
- 담당자 : 보험급여과 이광성 주무관
- 연락처 : 044-202-2740
- 이메일 : fadu5639@korea.kr

붙임 : 1. 고시 개정문 1부.
2. 별지 1부.
3. 변경대비표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